

투자일임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한다.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간 권리의무관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다만,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
2. 해외거래소 상장 주식
3.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개되는 주식
4.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주식선물
5.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 주식 관련 증권
6.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국공채, 통화채 등 확정금리부 금융투자상품
7.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loan, 발행어음, CD, CP 등
8.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권리로써 재산적 가치 있는 것

제 3 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7. 제 1 호 내지 제 5 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운용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위탁투자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투자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1]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외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 지급하는 수수료.
 2. 성과수수료 :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지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2. 기타 신의성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③ 고객은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 ④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⑤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⑥ 혼합형, 성과형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본형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 5 조의 2 (투자일임수수료의 납입)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제 5 조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며, 수수료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 [별지 2]을 적용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 년으로 한다.
-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고객과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이 동의할 경우 CMS 출금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사전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예고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4 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제 2 호 반영)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의 투자일임수수료는 [별지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이때 "고객"의 해지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은 철회 된 것이며 모든 투자일임수수료는 면제된다.
- ⑤ 고객의 계약변경 및 해지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까지 회사가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1]에서 정한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운용종료일까지로 하며,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한다.

제 8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 1 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말 성과보고서 제출시 투자정보확인서 서식을 함께 보내며, 통지 후 고객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9 호 반영)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제 1 호 반영)

제 10 조 (고객의 운용지시)

고객은 리스크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대면·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 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9.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10.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11.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12. 매매회전율
13.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정한 사항

제 12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 및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일임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일임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제 14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1]**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및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 (운용결과의 귀속)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재산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삼자의 금전·증권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해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17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인수한 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매입이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 18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재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및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는 제외
4.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제 19 조 (업무 위탁)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전요청에 의하여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재산의 평가)

제 20 조의 현금 이외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위탁투자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위탁투자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2. 기타 계약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 22 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21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 완료된 약관을 변경하지 않으며,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2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회사 이외의 제3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4.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25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6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